

◆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◆

-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- 「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-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7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-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

-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·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

□ 주요골자

-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당연직위원은 양주시 공무원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의원 4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)
-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검토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범위를 정함
(안 제4조 위원장)
- 검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

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)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공적·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와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나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함 (안 제6조 임기)
- 지형·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,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위원회의 검토 기능을 정함 (안 제7조 기능)
- 지역 및 도시개발, 산업·유통 및 관광단지 개발, 교통시설 및 하천, 산지개발 등 4개 분과위원회를

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함 (안 제8조 분과위원회)

-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안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,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
(안 제9조 검토의견 제출)
-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, 사업시행자, 사업승인기관,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
(안 제10조 현지조사)
-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함
(안 제11조 협의의견 반영)
-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대상사업을 협의 검토 하여야 하고 위원이 검토대상사업에 직·

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, 당해 검토대상사업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규정을 정함 (안 제12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)

-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, 의사일정 통보,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정함 (안 제13조 간사)
-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개회·폐회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 성명, 검토사항, 토의진행사항, 위원발언 내용,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도록 정함(안 제14조 회의록)
-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(안 제15조 수당과 여비)

【검토결과】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2005년 1월 27일 전문개정 되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 · 인가 · 승인 · 결정 ·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되어
 -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· 운영할 수 있고, 운영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
 - 상위법인 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소방방재청의 「지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」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흡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